

# 민간경비 활동의 공익성 확대 논의

공배완\* · 박용수\*\*

## 요 약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고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인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 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가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Expand public interest of Private Security activities

Gong Bae Wan\* · Park Yong Soo\*\*

## ABSTRACT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re complementary to the national safety of life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s a social role to play in maintaining peace and order. Pursuit of profit is to the public practice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ist markets and customers seeking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Howev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f private security is being requirements inhibited by the development. Crime prevention as a private security role that the private companies, which will pursue the public interest. After all,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ecurity crime is results in an increase in unit. The current level of private security in the 1970s remain, and the constraints is being under goodwill and expertise outside of the training system on the market. Variety of crimes, including cyber crime increases and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constraints on private security requirements are able to improve or supplement shall be realistic. In particular, the leg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actors must be improved, with goodwill, and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al policy as a complement to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also provided. The private security law interests through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term of the theorem, sales activities, ensur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taff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ystem is to be settled. As a private security guard industry growth and development can be based on this composition.

**Key words : private security, public security, constraints of private security, profit, public interest,**

접수일(2014년 1월 28일), 수정일(1차: 2014년 2월 17일),  
계재확정일(2014년 2월 18일)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 1. 서 론

산업사회에 이어 정보화 사회에서는 불안요인이 사회 저변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띠면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회불안은 개인적 연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또는 조장에 의해 불안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에 대한 결과는 개인의 신변과 생활문제로 귀착되며, 개인은 상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이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본능적 심리감을 갖게 되고, 이는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조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안전보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제도적 장치와 역할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과 사회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이고 책임감이다. 따라서 국가는 최고 권력행위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통제한다. 사회 안녕과 질서는 국가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제적 통제와 인위적 조정은 국가존립을 위한 사회적 당위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위험요소의 증가와 더불어 민간경비의 공익적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의 기대심리도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발전 가능성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의료지원 통합 서비스, 무인화 코너 시스템 경비, 홈 시큐리티, 타운 시큐리티, 컴퓨터 범죄관련, 고령화 사회의 안전지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안전서비스, 사회간접 서비스분야 등 민간경비의 역할과 시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발전 제약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주의 시장을 바탕으로 무한한 효용창출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생활이 현실화 되며 발전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기술을 이용한 민간경비의 공익적 역할은 제도

적 장치와 법적 요건, 사회적 조건에 의해 발전 제약을 받고 있다. 안전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 요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여타 요인들은 사회적 요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역할모색이 제도적 장치로서 제고되어야 한다.

## 2. 민간경비의 사회적 본질

### 2.1 이론적 배경

경비(警備, security)의 사전적 의미는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10]. 즉, 여러 위협요인으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의 예방적 역할을 말한다.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일은 군사적 예방활동이고, 사회위협 및 공공질서 훼손에 대한 예방활동은 경찰의 역할로 구분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시장논리에 따라 형성된 사적 범죄예방활동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민간경비는 군사적 개념과 경찰의 예방활동과는 제도적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역사적 과정에서는 혼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즉, 공적(公的) 영역과 사적(私的) 영역의 경계가 모호했던 고대사회에서부터 단순방어 개념의 경비가 발전되어 오면서 제도적인 분화를 거쳐 온 것이다[2].

민간경비가 제3의 시큐리티 섹터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이론적 설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공동화이론, 경제환원론, 이익집단론, 수익자부담 이론 등은 민간경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들로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팽창시키면서 사회범죄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는 민간경비의 발전을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은 개인안보의식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서 민간경비의 시장 확충과 자생적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학술적 설명들이다[2]. 민간경비의 발전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발전과 더불어 산업의 한 영역으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대민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전하고

있다.

## 2.2 민간경비의 생래적 역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사회 안전서비스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다. 보다 구체적 역할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범죄예방이다. 17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자발적 지역방어형태의 시큐리티 개념이 오늘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범죄예방지원 서비스로 발전한 것이다[2]. 따라서 민간경비의 생래적 역할은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그에 상응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에 따라 안전활동에 대한 범위와 규제가 다를 뿐이다.

민간경비의 발전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의 신개념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고객의 안전욕구에 맞추어 실시간 원격장치에 의한 토탈(total) 시스템 방식의 범죄예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기동력과 감시력을 능가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체기구로서 민간경비의 활용과 치안용역 유용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민간경비가 치안 보조적 개념에서 벗어나 독자적 치안기구로서 범죄예방의 중추적인 역할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은 사회적 요인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 복합적 추진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토탈 시큐리티(total security)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배경으로 개인 또는 집단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안전의 최적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영상감시가 가능하며 침입이나 위협요인에 대한 적절한 예방 기능과 대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의 본질은 영리성을 바탕으로 한 공익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고객의 안전욕구에 맞는 기술적 장비와 기능적 인력의 구축은 영리활동의 기본 바탕이 된다.

## 2.3 민간경비의 제도적 역할

한국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의 영업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민간보안 분야에서의 영업활동의 범주가 되는

것이다. 즉, 민간업체로서 이 외의 대민 안전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민간경비업체는 반드시 법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상 일반 법인과는 자금과 인력, 장비 측면에서 기본조건의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 업종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조건의 차이가 있으며, 법인은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적당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사적 영리성 측면에서는 시장논리가 배제되어 있다.

현행 법 상 민간경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6개의 영역에서 고객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특수경비제도가 탄생되면서 청원경찰과 다소의 업무중복이 나타나기도 했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자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계경비와 시설경비의 혼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1][15]. 이러한 업무의 혼합, 영역의 중복은 다양성이 증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발전상 부득이한 현상이다. 또한 사회적 조건에 맞는 제도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발전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안전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체고되어야 한다.

# 3. 민간경비의 영업성 제약요인

## 3.1 법적요인<sup>1)</sup>

민간경비업체는 설립당시부터 상법상 법인설립과는 다르게 까다로운 설립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법상 영리기업의 설립기준은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발기인이면 가능하고, 자격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법인 등 특별한 제한이 없다(상법 제288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

1) 법적요인에 대한 내용은, 공배완,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81-189, 2011.의 정리.

292조). 또한, 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다만,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 상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영업의 운영과 개폐가 자유롭다.

반면, 민간경비는 법인설립과 영업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요구되며, 법적 자본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도 5년이다<sup>2)</sup>.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sup>3)</sup>.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으로 규정된 영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감독관청으로부터 관리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 역량에 따라 기업운업을 하는 일반 영리기업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3]. 즉, 민간경비업은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3].

민간경비에 대한 공공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요인에 의해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은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장애 뿐만 아니라 사회치안문제에도 심각성이 유발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을 배경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수단으로, 치안수요 증대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간경비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공익을 위한 직업의 유형이다. 헌법(제15조)에 보장된 직업 및 소득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될

2)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으며(법 제3조), 법인은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3조). 경비업 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영업활동 분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허가사항의 영업내용 변경이나 휴업이나 폐업 등에 대해서도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경비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3)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5조):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이 법 또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 있어야 하고, 법적제약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3.2 제도적 요인

민간경비원이 되기 위한 제도적 요건은 다른 허가업종에 비해 허술한 편으로 서비스 부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분야나 사람과 사회의 통제역할을 하는 공공안전분야에 비해 자격요건이나 질적 평가를 위한 절차 등이 무시되고 있다[6]. 이는 결국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민간경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민간경비원 자격기준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p> <p>①만18세 미만인 자</p> <p>②금치산, 한정치산자</p> <p>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④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p>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p> <p>①만18세미만 또는 58세 이상인 자.</p> <p>②금치산자, 한정치산자</p> <p>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④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p> <p>⑥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p>	<p>청원경찰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18세 이상 50세 미만</p> <p>②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p> <p>③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p> <p>④신장이 남자는 160cm 이상, 여자는 150cm 이상</p> <p>⑤체중이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3kg 이상.</p> <p>⑥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p> <p>⑦기타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p>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업법 제10조	청원경찰법 제5조 3항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입교육(일반경비원 28시간, 특수경비원 88시간, 청원경찰 76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민간경비원이 될 수 있다. 최소한도의 교육과

정을 요구하고 자격시험을 거쳐야하는 의료분야(물리 치료, 치기공, 안경 등)나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공안전분야(경찰, 교정, 소방 등)에 비해 민간경비는 적성이나 자격, 학력요건, 경력,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2013년에 국가자격증으로 인증된 ‘신변보호사’를 제외하면 전문자격증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민간경비의 부실을 초래하고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비지도사의 경우도 국가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험과목, 재교육, 중복과목이수 등에서 제정비가 요망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역할은 경비원의 지도, 교육, 감독이다. 즉, 일선 범죄예방요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조정이나 합격자에 대한 교육이 수 과목, 자격증 발급 후의 재교육의 제도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7].

치안수요 증대에 따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규직종으로서 민간보안산업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학과개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장수요에 대한 적합성이 부족하였고, 학교마다 상이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에도 기여하지 못했다[6].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전문인력 양성의 부실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저해한다. 이는 결국 민간경비의 본질인 범죄예방역할의 사회적 공익성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한다.

### 3.3 영리적 요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합리적 영리활동은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이는 영업선택권과 직업선택권의 기본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한다[3]. 영업권(營業權)은 직업선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소득활동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한다. 공법상 영업권은 “자

유롭게 영업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나 영업의 자유와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10]. 따라서 영업권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의 보장(헌법 제23조)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영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3].

그러나 경비업법(제2조)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 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의 대인·대물 안전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비업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취득 없이 이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3]. 상법상 영업행위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의 영리활동은 개인의 능력으로 귀속된다. 합법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개인의 영리활동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평가되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불안과 더불어 각종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기관의 관리범주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주에서의 소득활동은 영업권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공권력과 같은 특별한 대인·대물 통제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영리활동의 범주를 제약시킨다는 것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범죄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시키는 것이다.

## 4. 민간경비의 공익성 향상 방안

### 4.1 경비업법의 보완

현행 경비업법은 크게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제정·공포되어 2013년 3월까지 총 38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청원경찰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경비업법 제1조)으로 하여 1976년에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 운용에 대한 여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6][9][14][17]. 신분상의 차이, 직무역할의 차이, 보수 차이, 권한의 차이, 직업안정성에 대한 차이 등 동일한 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 요인들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단일화 된 통합법의 설치로 동일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청원경찰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반 민간경비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떠한 법적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동일 신분에 대한 차별적 권한의 부여는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는 통합법을 운영함으로써 해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주택관리법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므로 사회안전분야에서의 공공성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의미가 퇴색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안’, ‘안전’ 등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 혼용성은 피해야 한다.

## 4.2 영업활동의 확대

영리성의 보장과 영업영역의 확대는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규 산업영역이 발생되고,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 경제력은 새로운 도약 기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규제완화,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 등 최대한의 가용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과거의 규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도 아날로그식 용어와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시장논리와는 배치된 영업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법인설립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드웨어적인 고정관념이 영업활동의 확대를 가로

막고 있으며, 신규 보안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진출도 불가능하다. 약 40년 전의 규제논리가 아직도 현장에 적용되며 보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제한된 허가영역이 이제는 확대되어야 하고, 신규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업체도 안전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구매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재투자를 통한 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에 대한 국가독점 현상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아이টে็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만으로 더 이상 보안산업의 발전은 이룩할 수가 없다.

특히,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경비의 진출과 경찰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은 민간경비의 확대와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과 범죄예방 등 경찰업무의 일부를 민간경비에 이양하는 방법도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 활동의 허가영역 확대와 더불어 공적업무수행의 제도적 위임(아웃소싱)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4.3 전문인력의 육성 및 선발의 제도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경비의 경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선발에 대한 공통적이며 공식적인 과정이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사회의 전문직종으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희노동력의 임시직종 또는 저학력자들의 단순직무 정도로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전문직종으로서 사회적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제도부터 설치되어야 한다[6][7][12][13][14].

전문자격증은 그 사람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제도는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한 전문 업종에 대해 직무평가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 또는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신념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문교육의 이수가 요구되고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치며 전문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전문자격증은 전문적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사

회가 발전 할수록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범죄예방역할을 하는 직무이다. 단순 감시기능에서 벗어나 사람과 시설물에 대한 보호장치에서부터 기술적인 안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안보조서비스의 경찰업무 연계 까지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육성과 선발과정의 제도화는 전문자격증의 선행단계로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장수요에 맞는 적합한 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어야 하고,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여과과정도 필요하다.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며, 현실은 사이버 범죄와 결합된 토탈 시큐리티 개념의 보안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인위적·물리적 개념의 보안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14] 이것조차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공공성 향상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급주체로서의 혁신적 사고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결 론

민간경비의 역할과 민간경비산업은 각종의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신종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사적 안보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점유물로 여겨졌던 전자보안장치가 일반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영역의 감시 장치로서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장수요의 변화와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의 제도적 배경은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사이버 범죄를 비

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경비업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영리기업으로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규제도 정비되어야 한다. 통합법의 운용, 법적 용어의 정리, 신규산업에 대한 진출허용, 법적 권한 부여, 전문가격증 제도 등 토탈 시큐리티 개념에 부합되는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민간경비는 단순직무 기능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요건들로 인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거나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적 사고의 전환과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강의환, 김영삼, “청원경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민간경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2] 공배완, ‘민간경비론’, 경남대출판부, 2011.
- [3] 공배완,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81-189, 2011.
- [4]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51-71, 2010.
- [5] 공배완,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호, pp.1-17, 2008.
- [6] 공배완,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12호, pp.51-73, 2006.
- [7] 권상로,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2집, 2008.
- [8]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9] 김진환·이민형,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치안행정논집 제5권 제1호, 2009.
- [10] 네이버백과사전

- [11] 배철효, 김용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5(2): 189-218, 2006.
- [12] 송상욱 · 이민형,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5호, 2005.
- [13]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 산업의 정책방향”,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1-52.
- [14] 안황권, “시큐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보안의 대두와 물리보안업체의 대응”, 정보 보안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40.
- [15] 이상원,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6권, 2003.
- [16] 임대호, “사경비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7]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호, 2008.

---

[저 자 소 개]

---



**공 배 완 (Bae-Wan Gong)**

1989년 학사  
1990년 석사  
1993년 박사

email : gongbw@naver.com



**박 용 수 (Soo-Yong Park)**

1991년 2월 학사  
1995년 2월 석사  
2011년 2월 박사

email : yspark@cs.aelkr